

제 1386 호  
1987. 12. 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, 양 모 인  
 편집인 : 양 모 관, 김 성 순  
 전화 : 731-3111-3  
 인쇄 : 서울특별시 출판발간실  
 전화 : 735-3337

# 시 보

## 차 례

㉠ 규 칙

- 제 2200 호 :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개정규칙..... 3
- 제 2201 호 : 서울특별시부경정경심의위원회의규칙..... 3
- 제 2202 호 : 서울특별시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을위한의료기관의 지정·관리규칙..... 5

㉡ 고 시

- 제 831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..... 7
- 제 832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..... 7
- 제 833 호 : 사료성분등록제 실시지시..... 8
- 제 834 호 :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..... 9

<이법제속>

공 람	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866 호 : 지방사업지지정 ..... 9

◎ 공 고

제 748 호 : 김포지구환경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경예장지지정..... 10

제 749 호 : 도시계획사업 ( 가스 공급 설비 ) 완료 ..... 11

제 752 호 : 조례안입법예고 ..... 11

◎ 사 령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가족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.12. 5

서울특별시 장

**◎서울특별시규칙제 2200 호**

서울특별시가족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가족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- 2. 육가, 공공단체와 그부속기관에서 실험·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부정경쟁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.12. 5

서울특별시 장

**◎서울특별시규칙제 2201 호**

서울특별시부정경쟁심의위원회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서울특별시 부정경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조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- 1.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
- 2.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물 위한 제동 및 홍보등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- 3.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부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이 되고, 위원은 서울특별시 상공과장, 유통지도담당관, 관광담당관 및 사회지도담당관과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사람이 위촉하는 자로한다.

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(이하 "회의"라 한다)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회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다만,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상공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7 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

재하여야 한다.

1. 회의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의 직, 성명
3. 심의안건의 내용
4.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공과장이 이를 대행한다.

제 8 조 (수당)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위생분야중사자들의 건강 진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정, 관리 규칙 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.12.5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2202 호

서울특별시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정, 관리규칙

제 1 조 ( 목적 ) 이 규칙은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의료기관(이하 "지정 의료기관"이라 한다)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지정 의료기관 )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(이하 "건강진단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은 종합병원, 병원 및 의원 중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한다.

제 3 조 ( 지정 절차 ) 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 지정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 1 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 시설 기준 등 ) 지정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원은 별표와 같다.

제 5 조 ( 지정 취소 )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원에 미달된 경우
2. 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결과물 허위로 기재한 경우
3. 종사자에 대한 감독의무를怠만이 한 경우
4. 기타 건강진단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① ( 시행일 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 지정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) 이 규칙 시행당시 증원의 건강진단증교부 의료기관건립 및 건강진단증교부요령에 의하여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.

[ 별표 ]

지정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원

1. 진찰실 및 검진실  
진찰과 검진에 필요한 기기를 갖추고 검진실은 진찰실과 구획되어야 하며, 건강진단시 일반환자와 혼용되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.

<p>2. 검사실</p> <p>진찰실, 점진실, 방사선실과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가.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등의 장내세균검사 및 배양시설</p> <p>나. 매독혈청검사시설</p> <p>다. STD임질검사를 위한 세균검사 시설 및 배양시설</p> <p>라. B형간염의 항원, 항체검사시설</p>	<p>[ 별지제 1 호서식 ]</p> <p>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신청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"> <tr> <td style="width:50%">의료기관명</td> <td style="width:50%"> </td> </tr> <tr> <td>개설자명</td> <td>주민등록번호</td> </tr> <tr> <td>소재지</td> <td> </td> </tr> <tr> <td>의료기관종별</td> <td> </td> </tr> </table> <p>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정될 받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</p>	의료기관명		개설자명	주민등록번호	소재지		의료기관종별	
의료기관명									
개설자명	주민등록번호								
소재지									
의료기관종별									
<p>3. 방사선실</p> <p>엑스선촬영실과 암실과는 구획되어야 하며, 체결핵진단을 위한 엑스선 촬영, 현상, 판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청 귀하</p> <p>[ 별지제 2 호서식 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 정 서</p> <p>지정번호</p>								
<p>4. 인 원</p> <p>가. 진찰과 점진을 실시하는 의사 1인 및 보조자 1인이상</p> <p>나. 병리검사를 실시하는 임상병리사 1인</p> <p>다. 방사선 촬영등을 실시하는 방사선사 1인</p> <p>라. 기타 건강진단에 필요한 인원</p>	<p>의료기관명</p> <p>내 표 자</p> <p>소재지</p> <p>귀 의료기관을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지정서를 교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청</p>								

**고 시**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31 조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나

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7. 12. 5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 건설부 직강주택조합의 18개 조합 조합장 김홍배 외 407 명
3.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

구분	동	축	시	축	계
위치	강남구 서초동 1346-1		강남구 서초동 1436-1		
	의 8필지				
내지면적	7,716.11㎡		12,152.30㎡		29,868.41㎡
건축면적	16,441.932㎡		26,926.907㎡		43,374.839㎡
규모	아파트 12층 2동 148세대		아파트 15층 2동 253세대		아파트 12-15층 1동 401세대
	연립 3층 1동 12세대				연립 3층 1동 12세대

4. 사업시행기간 : '87.11-'89.5

5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(폐지) 결정

구분	등급	유형	폭원(m)	연장(m)	기점	종점	비고
기점 변경 (폐지)	소로	3	4	65	서초동 1408	서초동 1408	아파트단지내
	"	3	4	22	" 1409	" 1409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62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

동법시행령 제 32 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7. 12. 5

서울특별시장

나 음		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3 호					
1. 사업명: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2. 사업주체: 두보건설㈜ 대표 이강진 3. 사업시행지의 위치, 면적 및 규모 가. 위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산 24번지 28호의 3 나. 면적: 14,713.20㎡ 다. 규모: 연립주택 3층 11동 216세대 4. 사업시행기간: '87.12~'88.10.30		사료 성분등록 폐업처리사항  사료관리법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폐업처리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.  1987.12.5 서울특별시장  1. 업체명: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2. 대표자: 서 청 태 3. 소재지: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연동동193-3 4. 사료의 종류 및 명칭용도.					
등록번호	사료의종류	사 료 의 명 칭 도 는 용 도					
5-151	대용유	축우용 대용유	1호	(생후 7-60일령)			
5-152	"	양돈용 대용유					
5-153	"	축우용 대용유	2호	(생후 7-60일령)			
5-154	"	"	3호	( " )			
5-155	"	"	4호	( " )			
5-156	"	양돈용 대용유	2호	( " )			
5-157	"	"	3호	( " )			
5-158	"	대용 탈지분유 (어린가축의 탈지분유 대용물)					
5-159	"	양돈용 대용유	4호	(생후 7-60일령)			
5-160	"	축우용 대용유	5호	( " )			
5. 사료의 성분량							
조단백질	조지방	칼슘	인	조섬유	조회분	비타민A	항 생 계
25%	8%	1%	0.7%	3%	8%	25,000 IU/kg	
이상	이상	이상	이상	이하	이하	이상	
25	5	0.8	0.6	5	8	"	엽산옥시테트라 사이클린 22mg/kg

조단백질	조지방	칼슘	인	조섬유	조피분	비타민A	항생제
20% 이상	12% 이상	1% 이상	0.7% 이상	3% 이하	8% 이하	25,000 IU/kg 이상	-
23	8	1	0.7	3	10	*	에리스로마이신 20 mg/kg
20	8	1	0.7	3	10	*	-
23	5	0.8	0.6	5	10	*	에리스로마이신 10 mg/kg
20	5	0.8	0.6	5	10	*	-
30	5	-	-	3	10	*	-
15	5	0.8	0.6	5	10	*	에리스로마이신 10 mg/kg
18	13	1	0.7	3	10	*	에리스로마이신 20 mg/kg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4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7. 12. 5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 종로구 제동 140-2 현대건설(주) 이명락
3. 사업시행지외 위치 및 면적, 규모  
가. 위치 : 도봉구 미아동 258-554  
나. 면적 : 4,041㎡

- 다. 규모 : 연립 3층 3동 54세대
4. 사업시행기간 : '87.12~'88.7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6 호

사방사업지 지정

1. 산사태 복구지 및 산사태기 사면에 의거 시행한 사방시설물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사방지정지로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.

1987. 12. 5

서울특별시장

사 방 지 정 지 원 황			
토지 (입야) 소재지	지정면적	시 설 물 현 황	비 고
구로구고척동산 7-1	0.35 헥타	석축쌓기외 3개공중	
고척동산 9-14	4.7 "	산돌쌓기외 2개공중	
산55-1	1.8 "	돌수로외 3개공중	
천왕동산 33-1	0.69 "	돌굴때기외 4개공중	
오류동산 15-11	0.39 "	석축쌓기외 3개공중	
개봉동 335-1	" "	산돌쌓기외 3개공중	
335-10	0.13 "	펜수설치	
335-18	0.22 "	"	
335-17	0.1 "	산돌쌓기외 3개공중	
서동동산 130-1	5.4 "	펜수설치외 2개공중	
산 73-2	0.88 "	돌수로외 3개공중	
산 83-6	0.92 "	석축쌓기외 3개공중	
산 83-8	0.2 "	산돌쌓기외 1개공중	
제 13 필지	16.17 헥타		

**공 고**

㉞ 서울특별시 공고 제 748 호

김포지구 환지계획 일부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

1. 건설부 공고 제 8 호 ('68.1.23) 로 사업시행 인가된 김포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일부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하였기를 공고한다.

1987.12.5.  
서울특별시청

- 환지계획변경내용 -

가. 사업명 : 김포토지 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26,175.2 제

(7,918.2 명)

다. 변경필수 : 41 필

라. 변경위치 : 1) 강서구침입구 - 원당

사거리간 공항로

전입 토지

2) 원당사거리 북측 402

부락 일대

마. 기타 :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.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749 호

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 완료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9 호 (85.3.18) 및 같은 고시 제 60 호 (86.1.29)로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 711 번지 일대

의 1 개소 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제 85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7.12.5  
서울특별시장

도시 계획 사업 완료 내역

사업시행위치	상계동 711 번지일대	상계동 711-16, 712-23
사업의종류	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	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
시행면적	44,928 ㎡	1,992 ㎡
건축면적	1,702.36 ㎡	121.45 ㎡
건축면적	2,766.72 ㎡	121.45 ㎡
시행사주소	영등포구여의도동 25-11	영등포구여의도동 28-1
성명	한일개발(주)대표이사 전창수	한국가스공사사장 권희성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752 호

조례안 입법예고

도시 교통정비법 제 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제의 적용을 위하여 도시지, 외곽지구분을 조별로 계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령안 입법

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7.12.5  
서울특별시장

교통영향평가법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- 1. 제정취지  
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 1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9 조 1 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도심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도심지역을 조별로 계정코자 함.

<p>2. 주요내용(도심 및 외곽지역 구분) 가. 도심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대문 주변지역: 퇴계로, 홍인문로, 을죽로, 사각로 및 의주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 다만 사업 및 시설의 추진출입로가 위해 열거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간선도로(폭 25m 이상)와 연결될 수 없는 경우는 그 부지처지를 도심지역으로 한다.</li> <li>- 영등포지역: 여의도 및 당산로 선유로, 경인로, 노들길을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</li> <li>- 영등지역: 반포로, 효명로, 역삼로, 언주로, 압구정로, 잠운로, 신반포로를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</li> <li>- 잠실지역: 석촌호수길, 오금로, 잠실철교 남단, 올림픽대로를</li> </ul>	<p>경지로 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호지역: 강동대로, 둔촌로, 구천면길, 선사로, 풍납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</li> </ul> <p>나. 외곽지역: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</p> <p>3. 의견제출</p> <p>이 조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7.12.24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청(참조: 교통기획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관, 반여부와 그 사유)</p> <p>나. 설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</p> <p>다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교통기획과(735-67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사 령

1987년 12월 3일자		령제 373 호	
성명	반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강현숙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임	감사담당관	지방행정서기
1987년 12월 5일자		령제 374 호	
성명	반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삼만	행정서기	관악구	지방행정서기

제 1386 호 서

보 1987.12.31.15-1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이영남	지방행정사기	관악구	행정사기

서울특별시장